

사전질의·답변 및 Q&A

2020.11.9.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1팀

Q01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부교직원의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의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연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 개정('20.6.11)에 따라 해당 절차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로 편성하는 내부교직원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은 교연비로 편성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A01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에서 내부교직원에 대한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을 편성·집행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리지침에 사업계획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연구비 등은 국립대학회계 예산 편성·집행 지침 상 해당 목(운영수당,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집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비 관리 책무성을 고려하여 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Q02

국립대학 회계 집행지침 '운영수당' 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이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A02

개정된 국립대학회계 예산 집행지침 운영수당 집행방법에 따르면,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지원·보조 받은 재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별 지침에 따르도록'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국립대학육성사업은 동 사업관리지침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내부 교직원이 사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경우 강사료 또는 원고료를 '운영수당'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Q03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리 지침에 따르면 7개의 '세부내역*'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세부내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 * ①인건비, 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③네트워크활성화 지원·운영비, ④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비, ⑤교육·연구력 증진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⑥장학금, ⑦기타사업운영비

A03

동 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세부내역별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학의 연도별 총 예산 범위내에서 각 세부내역별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비 관리 책무성을 고려하여 특정항목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Q04

사고이월금의 경우에도 당해년도 집행액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A04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출납폐쇄기한)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종료 후 20일 이내 지출 불가한 사항의 경우는 이월액으로 포함하여 재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차기 사업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비 이월범위 : 총 사업비(당해년도 배정금)의 10% 이내

Q05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 시상금(품) 또는 상품권(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 기념품 제공 등이 가능한지요?

A05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 모두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학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기념품 수령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증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Q06

위 질문과 연계하여 사업비의 직접수혜 대상은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의 경우에도 재학생 대상으로만 지급가능한가요?

A06

직접수혜라 함은 인건비, 장학금 등을 의미합니다. 시상금(품) 또는 기념품의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포함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에게 모두 지급 가능합니다.

Q07

사업 추진 시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서(교재 등)를 구매하여 참여자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매한 도서에 대하여 중앙관리(배포 후 회수) 하여야 하는지요?

A07

도서관 등의 자본 형성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포함되는 도서구입의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재료 등 자산취득 목적이 아니라면 중앙관리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Q08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원격 강의 강사료와 관련하여, 콘텐츠 제작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더불어 동일한 강의 영상을 다회 송출할 경우, 강사료의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요?

A08

원격 강의를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에 따른 개발비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한 강의 영상의 단순 반복 송출 횟수에 따라 동일하게 강의를 다회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녹화 방식이 아닌 실시간 원격 강의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준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Q09

내부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직무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09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동 사업 목적과 사업계획과의 연계 등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무관한 통상적인 교직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불가합니다(예: 교직원 연말정산 교육, 신입교원 오리엔테이션, 교직원 워크숍, 교직원 동호회 활동 등)

Q10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협력 대학 또는 기관과의 문화/체육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10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네트워크는 교육 또는 연구 등과 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도출이 가능한 내용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학/기관 간 일회성 행사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11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려 합니다, 이때 사업비로 시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11

사업목적에 부합된다면 지역주민 대상의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며, 시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Q12

코로나19 장기화 등 외부 환경 영향으로 인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A12

기 제출한 사업계획 기준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사업명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사업추진위원회 심의)
 단, 성과지표(공통, 자율)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성과지표별 3차년도 목표값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향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13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 2020년 사업비의 차년도 이월범위가 10%이내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A13

2020년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이월범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교육부 승인). 단, 아직 금년도 사업기간이 4개월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대학의 사업비 실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에 이월범위 확대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계획했던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Q14

사업비 집행을 위한 카드사용 시 법인(클린)카드 결제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추진 중 체육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 역량강화 활동' 을 위해 골프장, 스키장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법인클린카드 제한업종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아예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청구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른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14

추진하시는 프로그램이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추진 가능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좌이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법인카드 결제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수단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클린카드 제한업종(골프장, 스키장 등)에서의 사업비 집행 자체가 감사 등에 있어 집중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Q15

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강의 재료를 구매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해당 강의 재료를 참여자들에게 배포가 가능한지요?(예 : 필라테스 강의 중 사용된 도구, 찜질기 등)

A15

강의재료가 소모성이고 개인별로만 사용이 가능하여 공동사용이 불가하다면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에게 배포하셔도 무방합니다.